

투자설명서 변경 내용

□ **대상펀드명** : 트러스톤 제갈공명 연금저축 증권투자신탁[주식]

□ **변경 사유** : ① 제12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

②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
□ **효력발생일** : 2025. 5. 22.

□ **변경 내용**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요약정보			
투자비용	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 제 12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5. 3. 31. 기준</u> <u>2025. 5. 9. 기준</u>
투자실적추이(연평균 수익률)	제 12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5. 5. 9. 기준</u>
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5. 4. 30. 기준</u>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5. 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5. 4. 30. 기준</u>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제 12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일간 수익률의 최대 손실 예상액(97.5% VaR 모형 사용): <u>31.73%</u>	일간 수익률의 최대 손실 예상액(97.5% VaR 모형 사용): <u>36.19%</u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 제 12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5. 3. 31. 기준</u> <u>2025. 5. 9. 기준</u>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	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	1)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: 별도의 과세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	1)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: 별도의 과세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

	<p>니다.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(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)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.</p> <p>〈신 설〉</p> <p>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, 보유,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, 등록세,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.</p>	<p>니다.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(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)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.</p> <p>다만,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.</p> <p>다만,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외국납부세액은 투자신탁 단계에서 별도의 환급 절차가 없으며, 원천징수의무자(판매회사)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기구 이익을 지급하는 시점에 수익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세액 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.</p> <p>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, 보유,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, 등록세,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.</p>	<p>니다.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(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)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.</p> <p>다만,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.</p> <p>다만,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외국납부세액은 투자신탁 단계에서 별도의 환급 절차가 없으며, 원천징수의무자(판매회사)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기구 이익을 지급하는 시점에 수익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세액 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.</p> <p>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, 보유,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, 등록세,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.</p>
--	---	--	--

제 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

1. 재무정보	제 12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5. 5. 9. 기준</u>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제 12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5. 5. 9. 기준</u>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제 12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5. 5. 9. 기준</u>

제 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


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. 회사 개요	최근 기준으로 기재 회사연혁 추가	- <신 설>	<u>2025. 4. 30. 기준</u> <u>2022.11 종합자산운용회사로 전환</u>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. 최근 2 개 사업 연도 요약 재무내용	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제 26 기(2023.12.31)</u> <u>제 25 기(2022.12.31)</u>	<u>제 27 기(2024.12.31)</u> <u>제 26 기(2023.12.31)</u>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 규모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5. 4. 30. 기준</u>